

전기사업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 내용안내

- 대통령령 : 제218445호, 부령 : 제103호
- 공포일자 : 2009. 11. 20
- 담당부서 : 전력산업과
- 전문참고 : 지식경제부(www.mke.go.kr), 협회(www.keea.or.kr)

◎ 개정배경

- 「전기사업법」 개정('09. 5. 21, 시행 '09. 11. 22)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 저압 자가용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면제, 현실적으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어려운 군사 시설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 등에 대한 민원이 국무총리실 등 규제개혁부서에 다수 접수됨에 따라 전기안전이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일부완화 추진 필요

◎ 주요 조문별 개정내용

■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 기술인력 변경업무 협회 위탁(제62조제4항)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기술인력 변경 업무가 지식경제부·지자체에서 협회로 위탁

■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면제기준 완화(제40조제1항)

구분	현행	개정	면제 개소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심야전력	전압 600V 이하, 용량 200kW미만 선임면제	전압 600V 이하는 용량제한없이 선임면제	약 80여개
발전설비	10kW 이하 선임면제	20kW 이하 선임면제	약 40여개

- 동일노선의 고속국도 선임기준 완화(제40조제3항)
 - 동일노선의 고속국도 또는 국도에 설치된 터널용 전기설비는 1인이 2개소 까지 하되, 터널 전기설비를 원격감시 및 제어할 수 있는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4개소까지 겸직선임 완화
- 상용 발전기에 대한 전기안전관리 대행선임 허용(제41조)
 - 안전관리업무의 대행 규모는 현행과 동일하나, 그 동안 대행이 불가능 했던 발전설비에 대해 300kW 미만까지 대행 허용

구분	현행	개정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비상용 발전설비 500kW미만	비상용 발전설비 500kW 미만, 상용발전설비 300kW 미만
개인대행자	비상용 발전설비 300kW미만	비상용 발전설비 300kW 미만, 상용발전설비 150kW 미만

- 안전관리자 선임곤란지역 선임기준 완화(제42조)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군사시설 등에 기능사·일정학력 이상자가 선임될 수 있는 전기설비 선임기준 완화

구분	현행	개정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설치된 전기설비	300kW 이하의 전기설비	500kW 이하의 전기설비
섬이나 외딴 곳	500kW 이하의 전기설비	1,000kW 이하의 전기설비 및 발전설비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추가(제44조)
 - 전기설비의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 전기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

◎ 개정·공포일 : '09. 11. 20 (시행 '09. 11. 22)

■ 자세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www.keea.or.kr) 알림마당 입법 및 개정에 게재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내용안내

- 대통령령 : 제21830호
- 공포일자 : 2009. 11. 19
- 담당부처 : 에너지안전과(02-2110-5443)
- 전문참고 : 지식경제부(www.mke.go.kr)

◎ 제안이유

가스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가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9679호, 2009. 5. 21. 공포, 11. 22. 시행)됨에 따라 가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자격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안전관리업무의 위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용기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용기 등을 검사의 전부를 생략하는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업무의 위탁 범위 확대(안 제11조의2)

법률의 위임에 따라 고압가스저장자 중 소화설비에 비가연성·비독성 고압가스를 저장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수탁관리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함

나. 용기등의 검사의 전부를 생략하는 대상의 축소(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 1)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검사를 면제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인증 후 품질관리 소홀로 불량제품이 유통되는 문제점이 있음
-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제조하는 용기등을 검사의 전부를 생략하는 대상에서 제외함
- 3) 용기등의 안정성을 제고하여, 소비자 보호 및 가스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가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기준 마련(안 제18조의2 신설)

-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가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위원의 자격과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 2) 가스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가스안전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가스안전 업무와 관련된 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임직원 등으로 정하며,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전문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완화(안 제24조)

- 1) 전문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요건 중 「국가표준기본법」에 제23조에 따른 인정 규정을 삭제함
- 2) 전문검사기관의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인정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마.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의 기준 완화(안 별표 3)

- 1)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 현장에서의 실무경력을 고려하고 가스 관련 기술 발달에 따라 선임 인원의 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2) 소규모 냉동제조시설의 경우에는 일정한 실무 경력이 있는 냉동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 수자도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프레온을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제조시설이 중앙통제시스템을 갖춘 경우에는 안전관리원의 수를 2분의 1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함
- 3)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그 선임 인원을 합리적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내용안내

- 대통령령 : 제21819호
- 공포일자 : 2009. 11. 10
- 담당부서 : 건설정책과(02-2110-8356)
- 전문참고 : 국토해양부(www.mltm.go.kr)

◎ 의결주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공사의 다양화·복합화로 다수 업종이 혼합된 공사가 발생하여 다수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업종별로 등록기준을 충족하도록 되어 있어 건설업자가 다수 면허를 보유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기존 업종을 위한 최저 자본금 기준의 50퍼센트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최저 자본금의 50퍼센트까지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능력은 기존업종의 기술자와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자가 같은 종류·등급인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이미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내용안내

- 대통령령 : 제21810호
- 공포일자 : 2009. 11. 15
- 담당부처 : 주택정책과(02-2110-8233)
- 전문참고 : 국토해양부(www.mltm.go.kr)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룸형 주택 및 기숙사형 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기준을 확대하고,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 및 기숙사형 주택의 경우 다른 주택과의 복합건축을 허용함으로써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며,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하자보수보증금 산정 시 총사업비에서 하자보수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간접비를 제외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 대통령령 : 제2009-422호
- 예고기간 : 2009. 11. 06~26
- 담당부처 : 전력산업과(02-2110-5475)
- 전문참고 : 지식경제부(www.mke.go.kr)

◎ 개정이유

- 행정규칙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고시(전기공사사업운영요령)로 규정되어 있는 전기공사기술자의 전기공사 업무 범위, 경력 산정기준 등을 시행령으로 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
- 민원사무 처리기간 단축사업 추진에 따라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전기공사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의 처리기간을 단축
-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들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 주요내용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안) >

- 가. 현재 고시(전기공사사업운영요령)로 규정되어 있는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을 위한 경력 산정기준, 학력 산정기준 등을 시행령으로 규정하여 국민들의 예측가능성 제고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안) >

- 가. 종전 등기부등본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정비함
- 나. 전기공사업등록 관련 민원업무 처리기간을 종전 20일에서 14일로 단축
- 다. 전기공사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관련 민원업무 처리기간을 종전 7일에서 5일로 단축
- 라. 전기공사기술자 양성교육훈련기관 지정신청 민원업무 처리기간을 종전 15일에서 10일로 단축

전력기술관리법 유권해석(정부) 사례

이

종전 특급기술자나 특급감리자 해당은 기능장+경력5년/기사8년/산업기사11년에서 기술사가 아니면 특급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은 기능장이 해당사항이 없다는게 아니라 전력기술인협회 유료회원이 아니면 일부개정령안 공고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효기간동안 접수를 하면 특급을 받고 기간이 지나면 즉 공고를 보지 못한 사람은 고급이라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더욱더 이해가 안가는 것은 종전 특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단지 변경만 몰라서 못했을 뿐인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안된다는 것은 당채 무슨 말인지요? 특급에 해당하는 모든 조건이 유효기간 안에 들지 않는다면 모를까 활 말이 없지만 조건이 되면서도 몰라서 변경을 못하는 부분은 당연히 변경만하면 특급을 인정해야 하는것 아닙니까?

- “전력기술인(감리원)의 등급 또는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본인의 경력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협회 위탁)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 시행령 별표 1(전력기술인의 범위)과 별표2(감리원의 자격)의 개정(2006. 6. 22, 시행일 2006. 6. 24)은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기술사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에 대한 학·경력기술자 제도를 개선한 것입니다.
- 위 개정사항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충분한 홍보시간을 갖게 하기 위하여 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07. 6. 25)부터 시행되었으며, 동 개정내용은 우리부는 물론 전력기술인협회 홈페이지 및 관보에 게재하였습니다.
- 따라서 2007년 6월 25일 전까지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자격을 신청한 경우 이외에는 기술사만이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감리원의 자격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8. 5. 2)

02

건축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전력기술관리법에 의거 전기감리원을 배치신고 후에 해당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수행치 아니하고 전기감리원이 아닌 타공정감리원이 대행하거나, 시공사와 불협 또는 무리한 요구등으로 공사의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발주자 또는 해당 시공사가 이에 대한 상벌 조치는 무엇이고 처리절차와 해당기관은 어디인지 질의 드립니다.

-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력시설물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감리원이 다른 사람에게 공사감리를 행하게 하는 때에는 감리원과 그 상대방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발주자는 이미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감리원이 당해 공사감리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감리업자에게 감리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 PQ고시(지식경제부고시 제2007-159호) 별표 4(부표 4-2)에 따라 부실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PQ대상 발주자는 참여감리업체 및 감리원에 대하여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8. 5. 7)

03

민자투자사업공사 전기공사 책임감리원입니다.

올해 3월 시공사로부터 하도급계약통지를 서면으로 받았고, 서면내용 하도급 계약서 외 기타 서류를 추후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만 2개월 지난 현재까지도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독촉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하도급 관련 법률에 통지만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감리단에서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감리단에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률이 있는지...

서류만 접수하고 아무런 조치가 되지 않아 감리용역수행에 차질이 있기도 하고요. 또한 하도급 대비표는 원가계산서 총괄만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내역에 대한 대비표가 있어야 되는지요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감리원(발주자를 대신하여)은 전기공사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며,
- 「전기공사업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공사업자가 전기공사를 하도급주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발주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전기공사하도급계약통지서”에는 하도급(재하도급)내역이 명시된 공사내역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가계산서 총괄표가 아닌 규격·수량·단가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를 첨부하는 것이 하도급통지의 취지라고 판단됩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8. 5. 7)

04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별표4. 직접경비 항목 계상기준」에 의거 감리용역비 산정시 차량비 및 현지사무원을 계상하여 운영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정산기준이 명확치 아니하여 문의 드립니다.

직접경비는 본 용역 역무수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항목이므로 실제 감리투입기간(계약기간)이 아닌 실감리기간 또는 장비 및 인력투입기간 정산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특히 차량비의 경우 손료는 감리기간에 따라 정산하며 주연료 및 집비는 정산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며 사무원에 대한 정산 문구는 주석이 달려 있지 않습니다.

1. 차량비와 현지 사무원 정산시 감리기간(계약기간)에 대하여 정산하는지 아니면 투입기간에 대하여 정산이 가능한지의 여부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7조(직접경비) 관련 별표 4의 직접경비(차량비, 현지 사무인원 급료 등) 계상은 원칙적으로 감리기간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다만, 운영요령 제15조제5호 및 제27조제1항 단서에서 계약에 따라 특별히 정한 경우가 있다면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발주자와 감리업자가 비용 등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민원질의, 2008. 5. 13)

생활속 법령상식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10년간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다.



글 _ 박중복 변호사

Q 약 5년전 A와 동업을 하던 중 B에게 손해를 입혀 A는 도망을 가고 본인이 B로부터 사기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여 패소후 B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였다. 최근 수순문 끝에 A를 찾아가 본인이 B에게 배상한 2,000만원 중 1,000만원의 분담을 요구하자, A는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은 3년이 지나면 시효소멸된다며 변제를 거부한다. 대책은?

A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따라서 A는 귀하와 A가 공동으로 B에게 사기행위를 하였어도 3년이 지났으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듯하다.

그런데 대법원은 귀하의 경우와 유사한 사안에서 공동불법행위자(A와 귀하) 중 1인(귀하)이 피해자(B)에게 손해를 배상한 뒤 다른 공동불법행위자(A)에게 구상권을 행사(1,000만원 분담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B)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귀하)의 구상금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자에게 적용되는 단기소멸시효(3년)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민사채권과 같이 그 소멸시효는 10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그 시효의 기산점은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 즉 구상권자(귀하)가 현실로 피해자(B)에게 손해(2,000만원)를 배상한 시점(5년전)이라고 할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가 있다.

귀하는 B에게 5년전에 손해배상을 한 것이므로, 귀하의 A에 대한 구상채권은 아직 시효(10년)에 걸리지 않는다. 다만 구상금 액수(귀하 주장 1,000만원)는 법원이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귀하와 A의 부담비율(액수)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진다. ❖